

1995. 9.

光州廣域市西區物價對策委員會設置 및 運營에 관한條例案

審 查 報 告

都 市 產 業 委 員 會

光州廣域市西區物價對策委員會設置 및 運營에 關한 條例案 審 查 報 告

1995年9月
都市産業委員會

1. 審査經過

- 가. 提出日字 : 1995年 9月 12日
- 나. 提出者 : 光州廣域市 西區廳長
- 다. 回附日字 : 1995年 9月 20日
- 라. 上程日字 : 1995年 9月 25日
- 마. 開催回數 및 日數 : 1回 (1995年 9月 25日)

2. 提案說明의 要旨

(提案說明者 : 地域經濟課長 文勝彬)

가. 提案事由

- 지역물가 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한 제도적 조정기능 장치마련
- 시민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요금, 사용료등을 합리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함.

나. 主要骨子

-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한 협의조정

-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과 물가 안정시책 수립시행
- 물가 관련기관 단체간 협의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한 사항 추진
- 구에서 결정하는 요금의 심의 (주차요금, 폐기물 운반 수수료등)
- 기타 물가에 미치는 사항과,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요금, 수수료, 사용료등 조정 심의
- 구성
 - 위원장, 부위원장, 각 1인포함 20인이내로 구의원, 물가와 관련된 유관 기관, 교수, 언론인 관련 공무원등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(專門委員 尹在珪)

- 지역물가 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고 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써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될 수 있다면 제정함이 타당하는 의견이었음.

4. 質疑 및 答辯要旨 : 생략

5. 討論 要旨 : 생략

6. 審査結果 : 수정안 가결

7. 少數意見要旨 : 없 음

8. 其他事項 : 없 음

광주광역시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서구물가대책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①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한다.

1.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
2. 지역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
3. 물가관련기관·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
4.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
5. 모범업소 선정심의에 관한 사항 (개인서비스요금)
6.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위원회는 광주광역시서구에서 결정·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주차요금
2. 폐기물 수집·운반 수수료
3.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·사용료

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.

③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·단체의 장과 교수·언론인·구의회의원등 인사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
④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한다.

⑤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임기) 위원은 그 임기를 1년 6월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위원의 해촉)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, 질병,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.

제7조(회의) ①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.

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
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
제8조(실무위원회)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.

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고,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·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
제9조(간사 및 서기)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.

②간사는 지역경제과장으로 하며, 서기는 심의안건 제출 부서 주무계장으로 한다.

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10조(의견 청취)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11조(심의안건 제출) ①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하되 간사는 전 위원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.

②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·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2조(수당, 여비)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주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광주광역시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

광주광역시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(임기) “2년으로”를 “1년 6월로”로 한다.

안 제7조(회의) 제3항중 “과반수 찬성”을 “3분의 2이상 찬성”으로 하고,
동조제4항을 삭제하며 동조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.

안 제11조(심의안건 제출) 제1항 “송부되어야 한다”를 “송부하되 간사는
전 위원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5조 (임기) 위원은 그 임기를 <u>2년</u>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</p>	<p>제5조 (임기) ----- <u>1년 6월</u>로 ----- ----- -----</p>
<p>제7조 (회의)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<u>과반수의 찬성</u>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.</p> <p>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</p>	<p>제7조 (회의) ③ ----- ----- <u>3분의 2이상 찬성</u> ----- 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 삭 제 ></u></p> <p>④ ----- -----</p>
<p>제11조 (심의안건 제출) ① 제2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<u>송부</u>되어야 한다.</p>	<p>제11조 (심의안건 제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송부</u>하되 <u>간사는 전 위원에게 즉시 송부</u>하여야 한다.</p>